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03

발의연월일: 2020. 8. 7.

발 의 자:최종윤・인재근・이인영

김진표 • 박성준 • 김원이

조승래 · 김경만 · 박홍근

박상혁 · 김승남 · 한병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훼손지에 대한 복구·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,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,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·시행·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신설하고,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훼손, 자연환경복

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
- 나. 훼손 발생 이전의 구조와 기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고려하고,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을 고려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(안 제3조의2 신설).
- 다.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,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,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,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권고, 비용지원 및 환수,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, 추진실적의 보고·평가 및 유지·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함(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 신설).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조에 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2의2. "자연환경훼손"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자연환경의 구조 및 기능이 중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.
 - 2의3. "자연환경복원"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원래의 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로 되돌리거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자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 - 19. "자연환경복원사업"이란 제2호의3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)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복원되어야 한다.
 - 1. 자연환경훼손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연환경의 구조, 기능 및 자연 환경훼손이 발생한 이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.
 - 2. 산・하천・호소(湖沼)・연안・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

성과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- 3. 자연생태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정보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야 한다.
- 4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역주민,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"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·복구"를 "자연환 경복원"으로 한다.

제9조제7호 중 "복원을"을 "복원과 자연환경복원을"로 한다.

제4장의2(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

- 제45조의3(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합하고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, 복원 필요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(이하 "후보목록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1.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
 - 2.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 결과
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훼손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

-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하여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범위에서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1.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
- 2.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
-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(私人)
- ⑤ 그 밖에 후보목록의 작성, 비용의 지원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5조의4(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"라한다)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(이하 "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연환경복

- 원사업 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사업의 필요성과 복워 목표
- 2.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,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
- 3.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
- 4. 사후 모니터링 · 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
- 5.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
- ③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자연환 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4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5조의5(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·평가) ① 자연환경복원 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환경 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결과에 따라 포상하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 지

원할 수 있다.

-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, 추진실적의 평가기준·방법 및 절차, 포상 또는 비용의 차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5조의6(자연환경복원사업의 사후관리)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 복원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 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 된 자연환경을 유지·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 -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모니터링 및 그 결과 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 - ⑤ 그 밖에 모니터링의 내용·방법·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 환경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"을 "자연환경복원사업"으로 한다.

제4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자연환경복원사업

제50조제1항 본문 중 "자연환경보전사업"을 각각 "자연환경복원사업"으로, "환경부장관의"를 "제45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의"로, "생태계보전협력금중"을 "생태계보전협력금 중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범위안"을 "범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자연환경보전사업"을 "자연환경복원사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	1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2의2. "자연환경훼손"이란 자연
	적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자
	연환경의 구조 및 기능이 중
	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
	한다.
<u><신 설></u>	2의3. "자연환경복원"이란 훼손
	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
	회복시킬 목적으로 원래의 상
	태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로
	되돌리거나 환경 변화를 고려
	하여 새로운 자연환경을 조성
	함으로써 그 상태를 유지하고
	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3. ~ 18. (생 략)	3. ~ 1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9. "자연환경복원사업"이란 제
	2호의3에 따른 자연환경복원
	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
	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
	업을 말한다.
<신 설>	제3조의2(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

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사 저 업자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 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- <u>칙)</u>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 칙에 따라 복원되어야 한다.
- 1. 자연환경훼손이 발생하기 이 전의 자연환경의 구조, 기능 및 자연환경훼손이 발생한 이 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2. 산・하천・호소(湖沼)・연안・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3. 자연생태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정보 등 모든 자원을활용하여야 한다.
- 4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역주 민,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 다.

ll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	·ŀ
업자의 책무) ①	_
	-
	-
	-
	-
<u>.</u>	

- 1. ~ 3. (생 략)
- 4.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 원 · 복구 대책의 수립 · 시행 5. ~ 9. (생략)
- ② (생략)
- 내용)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다.
 - 1. ~ 6. (생략)
 - 7. 생태통로 설치,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
 - 8. ~ 10.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자연환경복원-----
- 5. ~ 9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9조(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제9조(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) -----

 - 1. ~ 6. (현행과 같음)
 - -----복원과 자연환경 복원을----

8. ~ 10. (현행과 같음)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3(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취합하고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, 복원 필요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 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 (이하 "후보목록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야 한다.

- 1.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자연환경조사 결과
- 2.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 결과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연환경훼손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
-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 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 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하여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

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 청장
- 2.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
- 3.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

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

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

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

 기관 또는 사인(私人)
- ⑤ 그 밖에 후보목록의 작성, 비용의 지원 등 자연환경복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4(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"라 한다)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(이하 "자연환경복원사업의 하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원사업 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

<u><신 설></u>

-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환경복 원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.
- 1.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
- 2.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,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
- 3.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<u>활</u> 용 계획
- 4. 사후 모니터링·평가 및 유 지관리 계획
- 5.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
- ③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 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 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4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⑤
 그
 밖에
 자연환경복원사업

 계획의
 수립
 및
 자연환경복원

 사업의
 시행에
 필요한
 사항은

 환경부렁으로
 정한다.
- 제45조의5(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·평가)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하거나 자 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분석 등 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, 추진실적의 평가기준·방법 및 절차, 포상 또는 비용의 차등지원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<신 설>

- 제45조의6(자연환경복원사업의 사후관리)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완 료된 지역을 훼손하여서는 아 니 된다.
 - ②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・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 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모니터링 결 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 경을 유지・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 -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

- 제46조(생태계보전협력금) ① (생략)
 -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 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 환경보전사업 및 「해양생태계 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률」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.
 - 1. ~ 5. (생략)
 - ③ ~ ⑥ (생 략)
- 제49조(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)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 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 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광업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

	관에 의뢰할 수 있다.
	⑤ 그 밖에 모니터링의 내용・
	<u>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</u>
	자연환경의 유지·관리에 필요
	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	<u>다.</u>
제	
	행과 같음)
	2
	자연환경복원사업
	<u></u>
	·
	1. ~ 5. (현행과 같음)
	3 ~ ⑥ (현행과 같음)
ᆀ	49조(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)
^II	43年(多明年至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

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 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2. ~ 14. (생략)

제50조(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·지원)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 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 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 (이하 "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자"라 한다)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,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 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. 다만, 산림 또는 산지에 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 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

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<u>범위안</u>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,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, <u>자연환경보전사</u>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,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·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<u>범위</u>
,
②
자연환경복원사
<u>업</u>
<u>.</u>